

의안번호	제531호
의결 연월일	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임병운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3월 5일

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임병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3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3월 5일

발 의 자 : 임병운, 박경숙, 김꽃임, 김국기,
이의영, 이양섭, 이종갑

1. 제안이유

-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자 범위 확대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충청북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문의 통일성을 위해 조례의 대상을 명확히 함 (안 제1조)
- 현행 비농업인으로 규정된 참여자 범위를 유희인력으로 개정하여 참여자 확대 도모 (안 제2조, 제3조)
- 인력지원 대상을 생산자단체까지 확대 (안 제7조)
- 재난피해 복구지원 참여자에 대한 특례 신설(안 제9조의2)
- 도시농부의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12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2024. 3.
- 협 의 : 농정국 농업정책과
-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비농업인” 을 “충북형 도시농부” 로 한다.

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비농업인” 을 “유휴인력” 으로 한다.

3. “생산자단체” 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비농업인” 을 “유휴인력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업 참여자” 를 “농업활동에 참여하는 충북형 도시농부(이하 “참여자” 라 한다)” 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신청” 을 “유휴인력의 신청” 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생산자단체

제9조제1항 중 “농업활동에 참여한 충북형 도시농부(이 조 및 제10조에서 “참여자” 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일부” 를 “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” 로 한다.

제9조의2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재난피해 복구지원 참여자에 대한 특례)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등에 대한 피해복구에 중복형 도시농부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시장·군수등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등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에 참여한 중복형 도시농부에게 해당 인건비의 전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 자연재해의 종류와 범위, 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.

제12조(도시농부의 진흥)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·군수등에게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진흥에 기여한 개인·법인·단체 및 공무원에게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비농업인</u>의 농업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사회·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, 도시와 농촌의 상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“<u>비농업인</u>”이란 농업경영을 하지 않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유희인력으로서, 「<u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.</p> <p>4. “<u>충북형 도시농부</u>”란 충청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지원한 <u>비농업인</u>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도지사는 <u>충북형 도시농부</u> 지원사업(이하 “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에 <u>비농업인</u>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,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충북형 도시농부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<u>생산자단체</u>”란 「<u>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</u>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.</p> <p>4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유희인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유희인력</u>-----</p> <p>-----</p>

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사업 참여자의 원활한 모집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충북형 도시농부 선정 등) ①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신청을 받아 충북형 도시농부를 선정할 수 있다.

② ~ ③ (생략)

제7조(인력지원 대상 등) ① 충북형 도시농부의 인력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(생략)

<신설>

2. (생략)

② ~ ③ (생략)

제9조(인건비 보조 등) ① 시장·군수등은 농업경영체등이 농업활동에 참여한 충북형 도시농부(이 조 및 제10조에서 “참여자”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략)

-.

② -----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충북형 도시농부(이하 “참여자”라 한다)-----

제5조(충북형 도시농부 선정 등) ① ----- 유휴인력의 신청-----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인력지원 대상 등) ①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생산자단체

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인건비 보조 등) ① -----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-----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9조의2(재난피해 복구지원 참여자에 대한 특례)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등에 대한 피해복구에 중복형 도시농부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시장·군수등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등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에 참여한 중복형 도시농부에게 해당 인건비의 전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 자연재해의 종류와 범위, 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.

<신 설>

제12조(도시농부의 진흥)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·군수등에게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진흥에 기여한 개인·법인·단체 및 공무원에게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”이란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농업인”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농업경영체”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.
4. “생산자단체”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8조(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, 농업 경영,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 구조를 개선하고,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

제4조(생산자단체의 범위) 법 제3조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.
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
2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
3. 「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
4. 삭제 <2015.12.22.>
5.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·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

<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>

1.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
2.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
3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 연합회, 「산림조합법」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
4. 「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·운영하는 자조금단체
5. 「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·운영하는 축산단체
6.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
7.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

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농업법인”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.
3. “농업경영체”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.

제4조(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) ① 농어업·농어촌에 관련된 용자·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(이하 “농어업경영정보”라 한다)을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농업경영체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0조에 따른 농지·축사

· 임야·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, 생산농산물,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· 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“농업경영정보”라 한다)

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임금, 보험 가입비, 교통비 등(조례안 제8조, 제9조)
- 도시농부의 진흥(조례안 제12조)

3. 관련조문

- 안 제7조(인력지원 대상 등)
- 안 제8조(사업지원)
- 안 제9조(인건비 보조 등)
- 안 제12조(도시농부의 진흥)

4. 비용 추계결과

- 재정수반요인 :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소요예산
- 추계의 전제 :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으로 함
- 추 계 결 과 : 1.2억원(도비)
- 재원조달방안 : 도비, 시군비 ※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함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반주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
세 입						
세 출	10,740	2,685	2,685	2,685	2,685	
기존 사업비	10,620	2,655	2,655	2,655	2,655	
추가 사업비	120	30	30	30	30	
재원 조달	10,740	2,685	2,685	2,685	2,685	
도비	소 계	3,306	826.5	826.5	826.5	826.5
	기존 사업비	3,186	796.5	796.5	796.5	796.5
	추가 사업비	120	30	30	30	30
시군비	소 계	7,434	1,858.5	1,858.5	1,858.5	1,858.5
	기존 사업비	7,434	1,858.5	1,858.5	1,858.5	1,858.5
	추가 사업비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